

##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영요령

제정 2009.08.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30호

개정 2012.07.2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0호

개정 2014.12. 9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68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체인사업자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체인사업자의 경영 개선사항 추진실적 및 경영능력 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체인사업자의 지속적인 경영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인사업자 평가제도”(이하 “평가제도”라 한다)란 체인사업자에 대해 경영 개선사항의 추진실적과 경영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체인본부”라 함은 법률 제2조 제5호의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본부를 말하며, “지점”은 본점 이외의 소재지에 설치한 지점을 말한다.
3. “직영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직접 운영하는 소매점포를 말하며, “가맹점”이라 함은 체인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체인본부로부터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받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제3조(평가제도의 운영기관)** ① 평가제도의 주관기관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② 1차 평가업무의 수행은 법률 제2조 제6호에 정한 체인사업 유형별로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1차 평가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1. 직영점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2. 프랜차이즈형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편의점협회

3. 임의가맹점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체인사업협동조합
4. 조합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제4조(평가의 신청)** ① 이 요령에 의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체인사업자(이하 “신청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체인사업자 또는 그 지점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자본금 3억원 이상. 다만, 조합형인 경우에는 출자금 1억원 이상
2. 체인사업 운영기간 6개월 이상
3. 점포면적 33평방미터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다만, 직영점형인 경우에는 점포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인 직영점을 5개 이상 보유
4. 체인점포 중 가맹점의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일 것.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③ 주관기관은 구비서류의 미비 등의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또는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 요건의 미충족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 신청사업자는 신청요건의 미비 등으로 인해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서류 일체를 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가맹점 인정기준)** 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은 체인본부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형의 경우에는 당해 조합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체인본부와 가맹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2. 상품공급의 조건·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상표 및 상호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경영지도, 판매촉진 등 가맹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계약의 갱신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체인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가맹점은 평가신청일 직전 6개월간 상품매출액 대비 체인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매입액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프랜차이즈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는 가맹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체인사업자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2.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공법인의 매장
3.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의 안에 위치한 점포

**제6조(평가 세부기준의 공표)** ① 주관기관은 1차 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세부기준은 체인사업 유형별로 평균수준을 감안하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신청요건과 서류 구비여부에 대해 심사하여, 신청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1차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1차 평가기관은 신청사업자의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경영개선실적에 대해 [별표 1]의 “체인사업자 평가표”에 따라 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경영실적 자료가 없는 항목에 대하여는 확보할 수 있는 경영실적 자료 중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간의 자료(「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신청일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을 말한다)을 12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한 금액)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2항에 따른 1차 평가기관의 평가과정에 참여하여 신청사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1차 평가기관은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평가 자료와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신청사업자는 주관기관 및 1차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요

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평가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⑤ 1차 평가기관은 평가의뢰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를 평가표 사본과 함께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주관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서의 발급)** ① 주관기관은 1차 평가기관이 통보한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다만, 1차 평가기관의 평가 의견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자료의 검토, 현장실사 등 재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신청사업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체인사업자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1차 평가기관에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서는 평가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구비서류의 보완 등에 소요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등)** ①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사업자는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재평가 신청서”에 의하여 주관기관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평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은 제10조의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조 제2항이 정한 요령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에 의해 신청사업자와 1차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평가의 처리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절차와 내용의 중대한 하자 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정당

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신청사업자의 불복 또는 주관기관의 결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재평가위원은 주관기관 및 해당 1차 평가기관의 직원, 외부 전문가 1명 등 3명으로 한다.  
② 재평가위원은 신청사업장에 방문하고 상호 협의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신청사업자에게 추가자료 제출과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서의 활용)** ① 이 요령에 의해 발급받은 평가서는 발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류중개업 면허신청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서의 활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인수합병, 경영부실 등 경영환경이 급변한 경우 체인사업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및 1차 평가기관은 이전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와는 독립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서의 재발급)** ① 체인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체인사업자 평가서 재발급 신청서”에 의해 주관기관에 평가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신청내용 등을 심사하여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서를 재발급한다.  
1. 사업자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된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그 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  
3. 삭제  
4.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및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5. 평가서의 분실·훼손 등  
② 재발급한 평가서의 활용기간은 종전 평가서의 활용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사업자의 평가서 활용기간으로 한다.

**제13조(평가결과의 취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당초 평가결과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한다.

1. 신청사업자의 허위자료 제출  
2. 제4조 제2항이 정한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 제3항에 의한 재평가 결과가 당초 평가결과와 다른 경우  
4. 기타 평가 이후의 중대한 사정변경 등  
② 평가결과의 취소가 해당 사업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된 때부터 평가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4조(반복신청의 제한)** 신청사업자는 재평가 등을 거쳐 확정된 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제15조(수수료)** ① 체인사업자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사업자의 부담으로 하되, 신청서 제출 시 일정액의 수수료를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 실시 이전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② 수수료의 금액은 주관기관이 1차 평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금액은 평가에 소요되는 평균적인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중소기업청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 우선하여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자에 한해 「주세법」에 따른 주류중개업 면허의 발급과 관련하여 적격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는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으로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한 체인사업자는 체인사업을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 체인사업자가 체인점포에 3개월이상 주류만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당초 평가서에 의한 적격 의견을 취소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의 제정)** 주관기관 및 1차 평가기관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실적의 보고 등)** ① 주관기관은 매년 평가제도의 운영실적을 익년 1월말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이 제6조에 따른 평가 세부기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 제17조에 따른 세부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주관기관은 1차 평가기관의 평가업무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업무의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요령 시행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체인사업자평가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2-20호) 및 「우수체인사업에 관한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8-45호)는 이 요령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체인사업자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점수
체인사업 기본역량	체인점포 수	체인점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5	
	상품매출 구성	체인본부의 매출액 중 주류를 제외한 일반상품의 매출액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5	
	지도요원 확보	체인점포에 대한 경영지도를 수행할 전문요원을 확보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5	
	운영 매뉴얼	체인본부 및 점포의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구비하고 점포에 배포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는가?	5	
	소 계		20	
상품활동	보유상품 품목수	체인본부는 체인점포에 필요한 상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품목을 갖추고 있는가?	5	
	본부공급비율	체인본부의 체인점포에 대한 상품공급비율은 평균 얼마나 되는가?	5	
	상품공급 및 관리 지도	1) 체인점포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2) 신상품 개발을 위한 지침 또는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3) 체인점포의 상권특성 등을 분석하여 상품 구성과 진열 등을 지도하고 있는가? 4) 적정재고 산정, 단품관리 및 발주방법에 대해 지도하고 있는가? 5) 선도 및 로스관리에 대해 지도하고 있는가?	10	
	관측활동 지도	체인점포의 관측활동을 지도하고 홍보물, 포장지 등을 공동제작하거나 배포하고 있는가?	5	
소 계		25		
경영지도 및 교육	경영지도 횟수	체인점포에 대한 연평균 경영지도 횟수는?	5	
	경영지도의 수준	체인점포의 경영분석, 상권조사 등을 토대로 체계적인 경영지도를 수행하고 있는가?	5	
	법률·세무 지원	체인점포에 대해 법률·세무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가?	5	



## 체인사업자 평가 의견서

신청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체인사업자 유형 [ ] 직영점형, [ ] 프랜차이즈형, [ ] 임의가맹점형, [ ] 조합형	
	주소	
평가점수	체인사업 기본역량 / 20	상품활동 / 25
	경영지도 및 교육 / 20	유통정보시스템 / 15
	집배송설비 / 10	체인점포 경영개선 / 10
	<b>합 계</b> /100	
평가자	(인)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의견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1차 평가관 : ( 직 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발급번호 제 - 호

## 체인사업자 평가서

신청인	사업자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체인사업자 유형 [ ] 직영점형, [ ] 프랜차이즈형, [ ] 임의가맹점형, [ ] 조합형	
	주소	
평가점수	체인사업 기본역량 / 20	상품활동 / 25
	경영지도 및 교육 / 20	유통정보시스템 / 15
	집배송설비 / 10	체인점포 경영개선 / 10
	<b>합 계</b> /100	
평가등급	[ ] 우 수, [ ] 양 호, [ ] 미 흡	
활용기간	평가서 발급일로부터 2년 (재발급일 경우에는 만기일자를 기재하여 발급)	

「체인사업자 평가제도 운용요령」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평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직 인 )

※ 재평가 신청안내	위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